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79
----------	------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박기재 의원 외 11명 발의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박기재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 대상 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처럼 재발하는 학대 상황을 방지하고자,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사후관리에 관한 참여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1.8)되었음.
- 이에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3항제2호)
-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3항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 학대를 예방 하고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 및 권익옹호 전문기관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각각 해당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1)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관정위원회 설치·운영
5.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²⁾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사례 판정, 사후관리 및 관련 교육, 홍보 등 6가지로 분류 할 수 있음.

<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요업무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사후관리
-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³⁾는 피해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2) 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관에는 기관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기관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산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3) 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기관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략..

③ 기관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현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담 및 사후관리는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배제되어 있음.

- ‘2021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피해장애인 대상 ‘상담 및 지원’이 1,519건 이루어졌음. 또한 피해장애인 안전 확인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학대 사건 사후 모니터링’이 238건 실시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 인권침해 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례지원비(1인당 최대 100만원) 및 피해장애인 쉼터 연계 등이 있음. 하지만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등 사후관리는 전무한 상황임.

<표> 2021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 추진 실적

(2021. 9. 30.)

구 분	계 획	실 행	대비(%)
장애인학대(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접수	760건	631건	83
장애인학대 의심 현장조사	110건	111건	100
장애인학대 사건 상담 및 지원	2,400건	1,519건	63
장애인학대 사건 사후 <u>모니터링</u>	240건	238건	99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2회	1회(상반기)	50
장애인학대발생 거주시설 사례분석 및 연구	-	-	연구사업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4,000명	3,341명 / 155학급	84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집합교육	860명	480명 / 8회	6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인권교육		95명 / 1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u>모니터링</u>	44개소	10개소	23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교육	253명	209명 / 3회	83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인 어려운 행동 컨설팅	176회	75회	43

- 2020년 접수된 전국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총 4,208건이며, 이 중 학대 사례는 1,008건으로 집계됨.⁴⁾ 이 가운데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총 605회 실시되었으며(2020. 12. 31. 기준), 상담이 전체 8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인 유형별 실시 횟수는 다음과 같음.

<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유형별 실시 횟수

유형 구분	상담	교육	모니터링	총계
실시 횟수	525회	3회	77회	605회

* 자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6회 국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2020. 12. 31. 기준)

- 현행법 상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에 대한 참여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미비하였고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⁵⁾이 개정('21.8.17) 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었음.

4)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8.30.)

5)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세부 조례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에서 지원대상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구체화하였음.
-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현행	개정안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② (생략)</p> <p>③ 기관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생략)</p> <p>2. <u>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u></p> <p><신설></p> <p>3. ~ 5. (생략)</p>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u></p> <p>3. <u>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u></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다.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종합의견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으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기능을 명확히 명시하여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사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7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박기재,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소영, 김제리,
김호진, 김화숙, 문병훈,
오한아, 이영실, 조상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장애인 대상 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처럼 재발하는 학대 상황을 방지하고자,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사후관리에 관한 참여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1.8)되었음.
- 이에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3항제2호)

나.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3항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
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3.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② (생략)</p> <p>③ 기관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 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생략)</p> <p>2. <u>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u></p> <p><u><신 설></u></p> <p>3. ~ 5. (생략)</p>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u></p> <p>3. <u>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u></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문서번호

2021101200000066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12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기추진 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서울시 복지정책실 기추진사업 2021년 예산 652백만원(국비73백만원, 시비579백만원)(붙임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33,500천원으로 연평균 6,7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비용은 성북구 피해장애인 쉼터사업 참고하여 추계
 -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은 서울시 유사사업을 준용하고 교육은 1년에 1회 시행하는것으로 가정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33,500천원
 - 총 비용 = 장애인 학대행위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장애인 학대행위자 교육비+장애인 학대행위자 의료적·치료비용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제10조의2제3항제2호 (장애인 학대행위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제10조의2제3항제2호 (장애인 학대행위자 교육비)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제10조의2제3항제2호 (장애인 학대행위자 의료적 치료비용)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소계 (b)	6,700	6,700	6,700	6,700	6,700	33,500
총비용 (b-a)		6,700	6,700	6,700	6,700	6,700	33,500

○ 장애인 학대행위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 ≍ 12,000천원
= 200천원 × 12개월 × 5년

※성북 피해장애인 쉼터 심리상담 및 치료비 200천원

○ 장애인 학대행위자 교육비 ≍ 12,500천원
= 2,500천원 × 5년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1회당 2,500천원

○ 장애인 학대행위자 의료적 치료비용 ≍ 9,000천원
= 150천원 × 12개월 × 5년

※성북 피해장애인 쉼터 병원비 및 약제비 15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무관 이혜린

☎ 02-2180-7955

e-mail : lovelyynn91@seoul.go.kr